

[거창군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 심 사 보 고 서]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

- 제 출 일 : 2003. 12. 1.
- 제 출 자 : 거창군수

나. 회부일자 : 2003. 12. 1.

다. 상정일자 : 2003. 12. 8.

(제105회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상정의결)

라. 의안번호 : 제 2003 - 65호

2. 제정이유 및 주요골자

가. 제정이유

-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하수처리장 설비를 구비한 하수도사업자는 의무적으로 공기업 전환조치를 취하여야 함.
- 2005. 1. 1 공기업 전환 업무개시를 원활히 하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- 하수도사업의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(안 제1조)
- 하수도 사업의 범위를 정함(안 제2조)
- 사업구역을 거창군의 행정구역으로 함(안 제3조)
- 부군수를 관리자로 지정함(안 제4조)
- 정원의 범위내에서 하부조직의 설치를 군수에게 건의함(안 제5조)
- 인사에 관한 규정을 정함(안 제6조)
- 관리자의 변상책임 한계를 정함(안 제7조)
- 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할수 있도록 함(안 제8조)
- 하수도사업과 기타 유사한 사업을 하수도 특별회계로 함 (안 제9조)
- 회계연도에 관한 규정을 정함(안 제10조)
- 일반회계등에서 부담할 경비등에 관한 규정을 정함(안 제11조)
- 일반회계와 다른 특별회계에서 출자할 규정을 정함(안 제12조)
- 일반회계와 다른 특별회계의 재정지원에 관한 규정을 정함
(안 제13조)
- 지방채 발행에 관한 규정을 정함(안 제14조)
- 예산의 탄력규정을 정함(안 제15조)
- 잉여금 처분에 관한 규정을 정함(안 제16조)
- 회전기금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함(안 제17조)
- 계리상황의 보고에 관한 규정을 명시함(안 제18조)
- 업무상환설명서의 제출과 공표에 관한 규정을 정함(안 제19조)
-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규정을 정함(안 제20조)

-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(안 제21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하수도 사업은 하수설비를 구비한 경우는 공기업으로 전환하도록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일반회계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설명 필요
- 독립채산 원칙에 따라 수익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인데 요금인상후의 현실화율이 30%에 불과한데 그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설명 필요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- 생략

5. 토론요지

- 생략

6. 수정안 요지

- 조선제 위원외4인 수정안 발의

상수도사업설치조례안과 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은 공기업회계로 전환을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조례안 상호간에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이를 수정코자 수정안을 발의

○ 수정안 대비표

제 정 안	수 정 안
<p>제12조(출자) ① <u>군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도 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를 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1. 공기업특별회계 전환시</u> <u>2호내지3호 생략</u></p> <p>제15조(예산의 집행규정) ① <u>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 마련지출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이 전부 해당되는 경우에 한한다.</u></p> <p><u>1. 당해 지출의 비목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</u> <u>2.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</u> <u>3.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 지출이 있는 사업연도내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</u></p> <p><u>② 이 경우 관리자는 군수와 거창군 의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.</u></p> <p>제19조(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표) ① <u>관리자는 매 사업연도의 1월 1일부터 6월말까지의 업무상황은 같은 해 8월 31일까지,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업무상황은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다음 각호에 게시하는 업무상황 설명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u></p> <p><u>1호내지 3호 생략</u></p> <p><u>② 군수는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설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군보 등에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.</u></p>	<p>제12조(출자) ① <u>일반회계</u>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<u>1. 창업시</u> <u>2호내지3호 현행과 같음</u></p> <p>제15조(예산의 집행규정)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<u>삭 제</u></p> <p><u>3.</u> ----- ----- -----</p> <p><u>② 삭 제</u></p> <p>제19조(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표) ----- ----- --연도-- <u>말일</u>----- --<u>말일</u>-----연도----- ----- -----</p> <p><u>1호내지 3호 현행과 같음</u> <u>②</u> ----- ----- <u>또는 지역주간지등</u> -----</p>

7. 심사결과 : 수정가결

- 본 조례안은 공기업특별회계를 설치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
조례안의 내용 중 일부 불합리한 조항이 있어
조례안 제12조 제1항 중 “군 일반회계”를 “일반회계”로 하고,
제1호 “공기업특별회계 전환시”를 “창업시”로 하며,
제15조제1항 제2호를 “삭제”하고 제3호를 제2호로 하며 제2항을
“삭제”하고,
제19조 제1항중 “해”를 “연도”로 “31일”을 “말일”로 하며, 제2항중 “군
보 등”을 “군보 또는 지역주간지 등”으로 수정코자 하는 수정안이 제
출되어 수정안과 같이 심사 가결함.

8. 소수의견의 요지

- 생략

9. 기타 필요한 사항

- 생략